

◎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-37호

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16일

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사유

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,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 수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신용정보업 감독관련 사항(안 별표 4.)

- 신용조회회사는 공공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조사·분석 업무의 겸업을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나, 의뢰기관(공공기관으로 한정) 및 업무범위의 제한(공공목적 조사로 제한)에 따라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크지 않아 위임 가능

### 나.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등록 등 승인(안 별표22-3.)
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·폐지 등 단순 업무사항을 타 금융투자업과 유사하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창업·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

다.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사항(안 별표 45.)

-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등 “승인·거부 등” 의 업무\*는 이미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, 그 중간과정인 “검토” 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위임토록 보완

\*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·변경등록 및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

라. 기타 경미한 사항(안 별표1., 별표6., 별표11.)

-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설치 및 감독원장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의 위임 및 자구 수정

### 3. 세부개정내용

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최근 제·개정 법규정보’ 를 참조\*

\* 금융위원회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 → 법령정보 → 최근 제·개정 법규정보

#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·구 조문 대비표

(별 표)

##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

위 임 사 항		관 계 법 규	
현 행	개 정 안	현 행	개 정 안
1. 은행감독 관련사항 가.~처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1. 은행감독 관련사항 가.~처. (현행과 같음) 커. <u>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수리</u>	<u>&lt;신 설&gt;</u>	<u>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</u>
4.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 가.~마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4. 신용정보업 감독관련 사항 가.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<u>신용조회 회사의 공공 목적의 조사·분석 업무 겸업에 대한 승인</u>	<u>&lt;신 설&gt;</u>	<u>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</u>
6. 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 가. (생 략) (1)~(8) (생 략) (9) 금융투자업 등록결정 내용의 공고	6. 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 가. (현행과 같음) (1)~(8) (현행과 같음) (9) 금융투자업 등록결정 내용의 공고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, <u>제117조의4제7항</u>
바. 종합금융회사·자금중개회사·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(1) 종합금융회사 (가)~(바)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바. 종합금융회사·자금중개회사·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(1) 종합금융회사 (가)~(바) (현행과 같음) (사) 지점등의 설치	<u>&lt;신 설&gt;</u>	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</u>

위 입 사항		관계법규	
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
<p>11. 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 가.~다. (생략) 라. <u>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접수</u> 마. (생략) 바. <u>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실 보고 접수</u> 사. <u>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한도 초과사실 보고 접수</u> 아. <u>고객정보관리인 업무지침서 보고 접수</u> 자. <u>임원변경 사실 등 보고 접수</u> 차. (생략) 카. <u>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 접수</u> 타.~더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11. 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&lt;삭제&gt;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&lt;삭제&gt;  사. &lt;삭제&gt; 아. &lt;삭제&gt;  자. &lt;삭제&gt; 차. (현행과 같음) 카. &lt;삭제&gt; 타.~더. (현행과 같음) 러. <u>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수리</u></p> <p>22-3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사항 가. <u>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</u>  나. <u>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부의 폐지</u>  다. <u>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해산</u></p>	<p>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2제1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제5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제4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5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 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제7항  <u>&lt;신설&gt;</u>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&lt;삭제&gt;  &lt;삭제&gt;  &lt;삭제&gt;  &lt;삭제&gt;  &lt;삭제&gt;  &lt;삭제&gt;  <u>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2항</u>   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</u>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6호</u>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</u></p>

위 입 사 항		관 계 법 규	
현 행	개 정 안	현 행	개 정 안
	<u>라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</u> <u>마. 전자계시관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 법 위반사실 신고 접수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요구</u>		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4호</u>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5</u>
45.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사항 가.~마.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  <u>&lt;신 설&gt;</u>	45.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사항 가.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<u>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·변경 등록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의 접수</u> 사. <u>감시인 선임승인 및 해임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의 접수</u>	<u>&lt;신 설&gt;</u>  <u>&lt;신 설&gt;</u>	<u>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</u> <u>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</u>